|  |  |  |
| --- | --- | --- |
|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시범시행)**환경보호부령제37호<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은 2015년 4월 2일자로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부장 진길우2015년 12월 10일제1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의 업무를 규범화 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환경영향후평가는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건설항목이 환경보호설비시공 검수를 통과하고,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행한 후, 그 실제 생산된 환경영향 및 오염방지, 생태보호 및 위험방범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아울러 보안방안 또는 개선조치를 제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유효성의 방법과 제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가리킨다.제3조 아래의 건설항목 운행과정 중 심사비준을 거친 환경영향보고서와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후평가를 전개해야 한다.(1) 수리, 수전, 채굴, 항구, 철로업계 중 실제 환경영향 정도 및 범위가 비교적 크며, 주요한 환경영향이 항목건설 및 일정기간 운영 이후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건설항목 및 기타업계에서 중요 생태환경 민감 지역을 통과하는 건설항목(2) 야금, 석화 및 화공업계 중 중대한 환경위험이 있고, 건설지역이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중금속 또는 영구성 유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항목(3)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환경영향후평가를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건설항목 제4조 환경영향후평가는 과학, 객관,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항목의 실제환경영향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각 환경보호조치의 실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제5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는 해당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책임진다.환경보호부는 환경영향후평가 기술규범을 제정하며, 행정구역 및 유역에 걸쳐 중대하고 민감한 항목의 환경영향후평가 업무를 지도한다.제6조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후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환경영향후평가 문서를 작성하며, 환경영향후평가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평가기구, 공정설계단위, 대학교(전문대학) 및 관련 평가기구 등에 환경영향후평가 문서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건설항목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한 환경영향평가기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문서의 작성업무를 맡을 수 없다.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후평가 문서를 최초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또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제7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문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건설항목 과정회고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실행조치, 환경보호설비준공검수, 환경감측상황 및 공공의견수집 조사상황 등을 포함한다.(2)건설항목 공정평가항목의 지점, 규모, 생산공정 또는 운행배치방식과 환경오염 또는 생태영향의 출처, 영향방식, 정도 및 범위 등을 포함한다.(3)구역환경 변화평가건설항목 주위지역 환경민감 목표변화, 오염원 또는 기타 영향원의 변화, 환경품질상황과 변화추세분석 등을 포함한다.(4) 환경보호조치 유효성평가환경영향보고서에 규정된 오염방지, 생태보호 및 위험방범조치가 적용 및 유효한지, 국가 또는 지방관련 법률, 법규, 표준의 요구에 도달하는지 등을 포함한다.(5) 환경영향 예측검증주요 환경요소의 예측영향과 실제영향의 차이, 기존 환경영향보고서 내용과 결론에 중대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가 있는지 여부, 영구성, 누적성과 불확정성 환경영향의 표현 등을 포함한다.(6) 환경보호 보안방안과 개선조치(7) 환경영향 후 평가결론제8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는 건설항목 투입생산 또는 운영 후 3~5년 내 전개해야 한다.기존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도 건설항목의 환경영향과 환경요소 변화특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후평가의 시한을 확정할 수 있다.제9조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단위의 건설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정구역, 유역 내 존재하는 겹치거나 누적된 환경영향의 다수 건설항목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제10조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후평가 완료 후, 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제11조 규정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후평가를 전개하지 않았거나 보완방안, 개선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해당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한부 개정 및 사회에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12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영향후평가 문서에 의거하여 건설항목환경보호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후속 건설항목 환경영향 평가관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제13조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가 비준을 거친 후, 그 성질, 규모, 장소, 공정 또는 환경보호조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14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제15조 본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试行）**环境保护部令第37号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试行）》已于2015年4月2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1月1日起施行。附件：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试行）部长 陈吉宁2015年12月10日第一条 为规范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所称环境影响后评价，是指编制环境影响报告书的建设项目在通过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且稳定运行一定时期后，对其实际产生的环境影响以及污染防治、生态保护和风险防范措施的有效性进行跟踪监测和验证评价，并提出补救方案或者改进措施，提高环境影响评价有效性的方法与制度。第三条 下列建设项目运行过程中产生不符合经审批的环境影响报告书情形的，应当开展环境影响后评价：（一）水利、水电、采掘、港口、铁路行业中实际环境影响程度和范围较大，且主要环境影响在项目建成运行一定时期后逐步显现的建设项目，以及其他行业中穿越重要生态环境敏感区的建设项目；（二）冶金、石化和化工行业中有重大环境风险，建设地点敏感，且持续排放重金属或者持久性有机污染物的建设项目；（三）审批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认为应当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其他建设项目。第四条 环境影响后评价应当遵循科学、客观、公正的原则，全面反映建设项目的实际环境影响，客观评估各项环境保护措施的实施效果。第五条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的管理，由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环境保护部组织制定环境影响后评价技术规范，指导跨行政区域、跨流域和重大敏感项目的环境影响后评价工作。第六条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负责组织开展环境影响后评价工作，编制环境影响后评价文件，并对环境影响后评价结论负责。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可以委托环境影响评价机构、工程设计单位、大专院校和相关评估机构等编制环境影响后评价文件。编制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影响评价机构，原则上不得承担该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文件的编制工作。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应当将环境影响后评价文件报原审批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接受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督检查。第七条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文件应当包括以下内容：（一）建设项目过程回顾。包括环境影响评价、环境保护措施落实、环境保护设施竣工验收、环境监测情况，以及公众意见收集调查情况等；（二）建设项目工程评价。包括项目地点、规模、生产工艺或者运行调度方式，环境污染或者生态影响的来源、影响方式、程度和范围等；（三）区域环境变化评价。包括建设项目周围区域环境敏感目标变化、污染源或者其他影响源变化、环境质量现状和变化趋势分析等；（四）环境保护措施有效性评估。包括环境影响报告书规定的污染防治、生态保护和风险防范措施是否适用、有效，能否达到国家或者地方相关法律、法规、标准的要求等；（五）环境影响预测验证。包括主要环境要素的预测影响与实际影响差异，原环境影响报告书内容和结论有无重大漏项或者明显错误，持久性、累积性和不确定性环境影响的表现等；（六）环境保护补救方案和改进措施；（七）环境影响后评价结论。第八条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应当在建设项目正式投入生产或者运营后三至五年内开展。原审批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也可以根据建设项目的环境影响和环境要素变化特征，确定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时限。第九条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可以对单个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后评价，也可以对在同一行政区域、流域内存在叠加、累积环境影响的多个建设项目开展环境影响后评价。第十条 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完成环境影响后评价后，应当依法公开环境影响评价文件，接受社会监督。第十一条 对未按规定要求开展环境影响后评价，或者不落实补救方案、改进措施的建设单位或者生产经营单位，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向社会公开。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依据环境影响后评价文件，对建设项目环境保护提出改进要求，并将其作为后续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管理的依据。第十三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经批准后，其性质、规模、地点、工艺或者环境保护措施发生重大变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第二十四条的规定执行，不适用本办法。第十四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第十五条 本办法自2016年1月1日起施行。 |